

대전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1077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림 담당변호사 우종현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소유권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0. 4. 24.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33,348,13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348,133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87098 구상금 청구를 신청하여 2017. 11. 17. 'B은 원고에게 71,185,158원 및 그 중 70,698,31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8. 2. 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의 모친 C은 2020. 4.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D 및 피고와 B을 비롯한 3명의 자녀가 있었다.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2020. 4. 24.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의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원금만 해도 70,698,319원 상당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체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이후 2020. 7. 10.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망인의 사망 당시 2020. 4. 24. 기준으로 191,125,800원, 시가감정일 2021. 6. 21. 기준으로 200,066,600원에 이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E조합의 피담보채무는 5,000만 원이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하 '채무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9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E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은 33,348,133원[=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 200,066,600원 - 피담보채무액 5,000만 원) x 채무자의 상속지분 2/9]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지급명령 확정 채권액인 '71,185,158원 및 그 중 70,698,31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보다 적다. 사해행위에 따른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는 공동담보가액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사건 분할협의를 33,348,1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3,348,1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 미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취소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일인 2020. 4. 24. 기준으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1,125,8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담보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주)G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으로 모친인 망인으로부터 2015. 8. 27.부터 2016. 5. 18.까지 합계 2억 3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여받았고 2015. 9. 30.부터 2016. 11. 9.까지 망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합계 64,556,86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망인으로부터 회사 사업자금으로 2억 300만 원을 받은 후 64,556,863원만을 지급한 이상 나머지 대여금 138,443,137원(= 2억 300만 원 - 64,556,863원)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채무자의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간주되는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은 279,568,937원(=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91,125,800원 + 채무자에 대한 증여 138,443,137원 - 피담보채무액 5,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은 62,126,430원(= 279,568,937원 × 2/9)이 된다. 결국 수증액(138,443,137원)이 법정상속분(62,126,430원)을 초과하여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목록]

1. 대전광역시 중구 대 178㎡

2.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위 지상

세멘트벽돌및연와조및경량철골조 슬라브지붕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주택

1층 67.2㎡

2층 6.75㎡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변소 2.31㎡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창고 9.91㎡

